

의안번호	제 63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심기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발 의 자 : 심기보, 임영은, 이옥규,
박상돈, 오영탁, 육미선,
전원표

1. 개정이유

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8월 11일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려 함.
-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1조)
 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제3호·제4호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 -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7조 →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8조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3조제1항)
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
-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존속기한 표시(안 제3조제2항)
 -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-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회의일정 통지 신설(안 제9조제5항)
- 관계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2조)
 - 민원조정실무심의회 → 민원실무심의회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0. 12. 24. ~ 2021. 1. 3.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제3호·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7조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8조”로, “민원조정실무심의회”를 “민원 실무심의회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설치)”를 “(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하여야”를 “않아야”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아니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회의 및 회의록)”을 “(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 의 하고”를 “시작 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안건심의 처리)”를 “(회의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0조제1항”을 “심의안건”으로 한다.

① 처리주무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며 그 결과(사본)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“(민원조정실무심의회 운영)”을“(민원실무심의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조정실무심의회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9조부터 제11조까지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4조제3항 제3호·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및 <u>민원조정실무 심의회</u>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설치) 「<u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령</u>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4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<u>대하여</u>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·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및 <u>민원실무심의회</u>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<u>선출한다</u>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<u>대해서</u>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<u>아니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 해촉) (생략)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</p> <p>5. (생 략)</p> <p>6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<u>아니하다고</u>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9조(회의 및 회의록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<u>개의하고</u>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<u>없다</u>.</p> <p>④~⑤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<u>않아야</u>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 해촉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않은</u> 경우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<u>않다고</u>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9조(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<u>시작하고</u>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~④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20 282 395 322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181 1041 775 1285">⑥ <u>처리주무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며 그 결과(사본)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81 1330 775 1509">제10조(안건심의 처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을 처리한다.</p> <ol data-bbox="220 1532 775 1980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.</u> 2. <u>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.</u> 3. <u>불가, 반려 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, 현실 적합</u> 	<p data-bbox="804 282 1407 994">⑤ <u>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39 1041 1015 1081"><삭 제></p> <p data-bbox="804 1330 1407 1644">제10조(회의록) ① <u>처리주무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며 그 결과(사본)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성,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.</u></p> <p>4. <u>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5. <u>법령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.</u></p> <p>② 위원회는 <u>제10조제1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.</u></p> <p>제11조(의견청취 및 조사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위원회는 <u>심의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.</u></p> <p>제11조(의견청취 및 조사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2조(민원조정실무심의회 운영)</u></p> <p>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·조정하고 관련부서 간의 처리방향 협의,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<u>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조정실무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<u>제11조</u>를 준용한다.</p>	<p><u>제12조(민원실무심의회 운영)</u> ①</p> <p>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·조정하고 관련부서 간의 처리방향 협의,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36조에 따라 <u>민원실무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<u>제9조부터 제11조까지</u>를 준용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4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
2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
2.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
3.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
4.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·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"민원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

2.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3.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

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,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, 관계부서의 장, 감사부서의 장,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36조(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·운영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(이하 "민원실무심의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·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에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